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범위 확대》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74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477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추가(안 제2조제4호)	2

I.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477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영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0. 18.

다. 회 부 일 : 2024. 10.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관리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검토의견

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추가(안 제2조제4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 7.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¹⁾로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공간정보가 생산·관리·활용·유통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주체별로 공간정보 활용체계가 중복 구축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거나 자료가 불일치하는 등 혼선 또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의²⁾하고,

관리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국가공간정보체계’로 정의³⁾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유기적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⁴⁾ 및 공동 활용⁵⁾ 원칙 등을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 개편⁶⁾ 결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축을 이루는 관리기관의 범위에 변동이 발생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것은 연구기관이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력과 예산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⁷⁾.

다만, 종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위를 부여받고 공간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1조(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여 23개 기관이 지정해제되고 3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는 등 총 327개 기관(전년 대비 20개 감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혁신·도전을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과기계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2024. 1. 31.

정보 협력·공동활용 체계에 속해 있던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기존과 같은 공간정보 생산·관리·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게 됨.

2024년을 기준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관리, 건설시추정보 전산화, 측량기기 성능검사,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및 연구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기능⁸⁾을 해 온 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 발전, 지하안전 확보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해 해당 기관에서 구축·관리되어 온 공간정보가 제도적 기반에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8)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건설시추정보 전산화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해오고 있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연구·개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2. 산업계 또는 학계와의 공동 연구 및 개발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함과 아울러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및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타당한 취지의 입법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및 연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공간정보 생산·관리 기능 및 다른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원활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범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추가적으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률상 근거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⁹⁾를 인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같은 법 제8조10)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률상 근거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규정한 입법례¹¹⁾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거 규정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 삭제 <2011.12.31>
3. 삭제 <2024. 1. 26.>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 삭제 <2024. 1. 26.>
6. 한국한의학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u>9. 한국건설기술연구원</u>	20. 한국원자력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른 자료 또는 자료의 수정·보완 조치결과를 제출(제26조 및 제27조)하거나,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통보(제29조)하거나,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정보를 제출(제30조)하는 경우¹²⁾,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하 “주무기관 사전 협의 절차 규정”이라 함)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는 법률상 위탁 규정 등에 근거하여 생산되는 정보이므로 해당 정보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됨.

1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가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를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에 공공기관이었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의 경우 해당 기관에 주무기관 사전협의 절차 규정이 적용되었는바, 이와 같은 주무기관 사전협의 절차 규정의 입법 취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의 중요성, 관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 ‘관리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경우’도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에 준하여 주무기관 사전협의 절차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³⁾.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조제4호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약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 현황 】

구 분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2호)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포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3호)	안전영향평가기관 및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포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4호)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5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관계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

문 의 처

02)6788-5578

□ 개 요

- (개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표준화된 개발·공동활용 환경을 제공하는 정보체계
- (기능)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표준 통합DB 서비스와 행정사무지원 및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플랫폼 역할 수행
- (운영주체) 국토부(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직접 운영

□ 주요업무(기능)

- 지자체 등에서 수사·소송 등을 위해 지적·토지정보 제공*하고, 부동산 개발업·공인중개사 정보 등록·관리 및 토지거래허가 등 행정업무 처리
 - * '23년 제공현황 (신청건수: 17백만건, 제공인원: 96백만명, 제공필지 : 1,457백만필지)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지자체에서 연계·취합한 공간정보를 기관별 업무시스템 등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제공
 - * '24.11월 65개 기관 107개 시스템 연계·제공(실시간 연계는 54개 시스템)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통해 2D·3D 기반의 정책지도 작성 및 공간분석 융·복합 서비스, 공간정보 품질관리 등 다양한 활용 지원
 - * K-GeoP 지도 등을 활용하여 기관홈페이지에 산책길, 보호구역 등 대민 서비스 구축
- K-GeoP의 기반을 활용하여 전세사기시스템, 공공주택 입지분석(LH),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등 구축 등 개발·공동활용 플랫폼 제공
 - * 인프라·데이터 등 공동활용으로, 소요예산 감축 및 중복구축 방지, 구축시간 단축 등

□ 활용 현황

- (보유DB) 국토관리·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재 등 205종 1,241건
- (제공현황)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107종 시스템 649,620건 연계·제공
- (대민서비스) 조상땅찾기·내토지찾기/스마트국토정보앱(부동산정보 조회)
 - * 연간 토지찾기서비스 약70만건, 스마트국토정보앱 약8,999만건 이용 중('24.11월기준)

참고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설립일자	1983.6.11.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설립목적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국가기반시설 성능 고도화, 국토재해 대응 기술, 친환경 국토조성 기술, 건설기반 융합 기술, 고성능 건설자재 기술 연구개발 ○ 건설, 국토 기술 정책 수립, 건설분야 국가표준 및 기준 개발, 기술사업화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 건설공사 및 기자재 품질인증, 인·지정, 검사 및 시험, 평가, 인증							
최근 대표적 연구성과	○ DNA 기반 노후 교량구조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및 활용기술 개발 - 500만건 이상의 노후화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최적화 기술, 미래 예측 기반 교량 노후도 평가 정확도(90% 이상) 향상 기술 개발 -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교량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 주거단지 음식물쓰레기 이용 발전소 규모의 청정 연료 생산기술 개발 -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친환경·저탄소·고발열량 청정연료 생산기술 개발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플랜트 에너지 효율 최적화 기술개발 및 청정연료 실 발전시설 적용성 평가 ○ Tech-lead형 액상화 피해 예측 가시화 시스템 및 고효율/저비용 액상화 보강공법 개발 - 지중구조물 피해 예측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3차원 액상화 위험지도 개발 및 세계 최고수준의 고해상도 액상화 위험지도 구축 기술 개발 - 전세계 유일의 국토지반정보 DB와 액상화 위험지도를 연동하여 자동 갱신 - 구조물 사용성을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액상화 위험지반을 효율적으로 보강이 가능한 고효율 저비용 보강공법 개발(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15% 이상 절감) ○ 우주건설 환경 모사 및 우주기지 건설 기초원천 기술 개발 - 현지자원활용 마이크로파 소결 블록(10cm급) 제조 및 진공 마이크로파 소결 기술 - GPS 음영지역의 1 lux 이하 저조도 환경에서 정확도 1m 급의 고정밀 3차원 지형 모델 구축을 위한 무인 지형 정보화 기술 개발 - 저전력(40.5 W), 경량(8.7 kg), 소형화(0.2 m3), 시추심도(1 m), 14 MPa 급 우주용 시추장비 개발							
조직/인력 (‘24.11.14.)	조직규모		정규인력 전체 인력현황(명)					
	2부원장, 13본부, 3연구소, 1위원회, 1부, 1스쿨, 8센터, 21실, 1팀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무기직	합계
			524	37	65	45	22	671
			연구직 인력현황(명)					
			박사		석사이하		계	
390		134		390				
수지총괄 (사업계획 및 예산) *이월금 제외	수 입(백만원)			지 출(백만원)				
	항목	’23예산	’24예산	항목	’23예산	’24예산		
	○ 정부출연금	69,782	60,320	○ 인건비	57,937	59,378		
	○ 자체수입 등	119,507	103,109	○ 연구직접비	119,098	92,081		
	○ 대체조정	-	-	○ 경상운영비	8,215	8,431		
				○ 시설비	1,039	1,039		
				○ 기타	3,000	2,500		
계		189,289	163,429	계	189,289	163,429		